

「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을 기업체 지원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
-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

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
2) 예 산 액 : 600백만원(도비 180, 시비 420)

3) 사업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
-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

나. 추진근거

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
- 3) 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사업 및 예산 지원 등)
- 4) 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사업의 위탁)
- 5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위탁사무

- 1)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
- 2)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개선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

라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바. 수탁기관 : (사)경북경영자총협회

사. 수의계약 사유

- 1) 2020년에 처음 시작하여, 2023년 경우 경상북도에서 도내 19개 시·군과 운영기관((사)경북경영자총협회, (사)경북동부경영자협회)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임.
- 2)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관내 기업과의 협조 등 원활한 업무추진 및 비용 절감

아. 성과평가 결과

- 1) 2020년 관내 10개소 지원, 2021년 관내 3개소 지원
- 2) 2022년 관내 3개소 지원, 2023년 관내 7개소 지원

자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, 제4조의3,
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2023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
 - 소규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 및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진단 및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,
 - 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